

의안번호	2212329
의 퇴 인	허성무 의원
회 답 일	2025.9.16.
추 계 번호	25F4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289억 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867억 원(연평균 28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공제가 3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29년까지 발생
 - 다만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출연금 규모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하여 이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제외하고 추계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29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8조의3)	289	289	289	867	289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목적의 출연에 대하여 공제율 20% 신설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공제율: (현행) 10% 단일 공제율 → (개정안)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20% 공제율 추가	
2	안 제8조의5 신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28.12.31.까지	
3	안 제8조의6 신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의 익금불산입)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 - 적용기한: 2028.12.31.까지	

Ⅲ. 비용추계의 전제 및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제외하고 추계함
2	안 제8조의5 신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8조의6 신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의 익금불산입)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2027년부터 발생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0~2024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5년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조세지출예산서」 상 최근 5년('20~'24)간 세액공제액은 연평균 289억 원
 - 다만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기금의 규모 및 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워 이를 제외하고 추계함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정보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개정안에 따라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정보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개정안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자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등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내국법인 등이 대·중소기업 및 농어업인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상생협력기금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 등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개정연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10.3.31. 제정된 규정으로 창업기업에 유형고정자산 임대 및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
 - － 2011.12.31. 일부개정: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
 - － 2014. 1. 1. 일부개정: 출연금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을 제외
 - － 2016.12.20. 일부개정: 출연금에 대한 공제율 10%로 상향, 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을 공제대상에 추가, 창업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시 취득가액의 3% 법인세 공제 및 사후관리규정을 신설
 - － 2019.12.31. 일부개정: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출연금을 공제대상에 추가
 - (현행규정) 내국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 협력중소기업에 유형자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3%, 내국인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기업규모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시설 등을 교육시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시가의 10%를 각각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 상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감면 실적은 2020년 202억 원, 2024년 295.2억 원으로 연평균 289억 원 수준
 - 동 규정은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의 실적에 따라 감면액 변동이 큰 편

[표 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감면실적: 법인세 및 소득세, 2020~2024년
(단위: 억 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법인세	202	212	329	408	294
소득세	0	0.8	0.5	0.5	0.2
합계	202	212.8 (5.3)	329.5 (54.8)	408.5 (24)	294.2 (△28)

주: 1) ()안은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감면실적의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신고연도

2)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 2020~2024년 연평균(289억 원) 감면 실적이 향후 3년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0~2023년까지 감면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전년대비 증가율의 변화가 크고, 2024년 기준 전년대비 감소(△28%)하여 증감추세를 알 수 없으므로 연평균 감면액을 기준으로 추계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289억 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867억 원(연평균 28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공제가 3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29년까지 발생
 - － 다만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출연금 규모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하여 이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제외하고 추계함

[표 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29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8조의3)	289	289	289	867	289

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지원에 대한 신설안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에 따라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인건비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세수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의 익금불산입 신설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세수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원금을 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자 함
-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파견한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 받은 지원금의 규모 및 향후 지급계획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2023.1.3. 제정되어 2023.7.4.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이란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으로,
 -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모집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하는 사업공고는 총 27개이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상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4]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정부일반형 스마트 공장	(SW)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HW)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FEMS 솔루션), 고효율 설비 등을 패키지 지원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확인기관) 참여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 상품화 지원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해당부처) R&D·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
자율형공장	(진단·기획) 기업별 공정분석,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기획 등 (구축) AI·디지털트윈을 적용, 가상환경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 등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 비용의 30% 이내 지원 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디지털협업공장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공정 개선, 공동협업 시스템 연결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업종별 대표 공정 또는 주요 생산품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디지털화에 적용 가능한 MES(제조관리시스템), ERP(전사적 자원관리), PLM(제품수명주기관리), AI(인공지능 솔루션) 등의 주요 기능·솔루션을 하나의 패키지로 공급 가능한 솔루션 개발 지원 ※ Public cloud 환경에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형태로 솔루션 공급이 가능해야 함
제조데이터상품 가공지원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을 통한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구축 지원 * (지원제외) 단순 범용 공정장비·설비 구입·교체는 지원대상 제외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 검사 등 패키지 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자가 역량진단) 공급기업이 자사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가 역량진단 기능 제공 (전문 역량진단) 전문 진단원을 통해 기본 진단과 심화 진단 진행 (기본 역량진단)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에 특화된 역량진단 모델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진단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기업에 제공 * (역량진단 모델) 경영, 기술, 프로젝트 관리 3개 분류로 기업의 역량을 측정 * 경영, 기술 부분은 기술보증기금의 AI 기반 기업평가모형(KTRS-FM)을 활용 (심화 역량진단) 기본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방향 도출, 중장기 역량 강화 전략 제시 등 심화 컨설팅 지원
제조데이터 상품 구매지원	AI 제조플랫폼(KAMP) 내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등록된 제조데이터 상품의 구매비용 지원
스마트공장 AS지원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지원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역량강화 교육,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 활용 관리, 지속적 H/W, S/W 개선 등의 AS를 주기적·장기간(6개월 이내) 지원

자료: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

- 2025.4.29.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모집단 163,273개사에 대한 표본 5,000개사 중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19.5%(중소기업 18.6%)이며, 도입에 따른 평균 비용은 11억 3천만 원, 중소기업은 7억 5천만 원이고, 기업 내 평균 종사자 14.7명 중 스마트공장 관련 종사자는 5.4명

[표 5] 2024년 지역별 공장 보유 기업 및 스마트공장 지원 기업 현황

(단위: 개사, %)

	공장 보유 중소·중견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전체 (A)	중견 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	전체 (B)	중견 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	비율 (B/A)
서울	8,952	25	578	2,031	6,319	770	9	137	324	300	8.6
부산	11,304	118	798	2,822	7,566	1,384	24	300	608	452	12.2
대구	8,913	112	797	2,701	5,303	1,583	45	271	740	527	17.8
인천	10,141	83	834	2,969	6,255	1,519	40	327	719	433	15.0
광주	5,865	68	432	1,498	3,866	670	19	153	293	205	11.4
대전	3,334	12	258	705	2,358	388	12	66	175	135	11.6
울산	2,248	124	402	831	891	496	33	146	202	115	22.1
세종	1,251	44	86	219	902	110	10	30	44	26	8.8

	공장 보유 중소·중견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전체 (A)	중견 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	전체 (B)	중견 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 공인	비율 (B/A)
경기	48,935	457	4,603	13,956	29,919	6,857	187	1,719	2,864	2,087	14.0
강원	4,228	30	300	916	2,982	424	15	81	166	162	10.0
충북	7,863	237	1,151	1,959	4,516	1,127	89	352	405	281	14.3
충남	7,206	233	965	2,345	3,663	1,480	95	461	536	388	20.5
전북	8,135	117	787	1,417	5,813	748	33	166	270	279	9.2
전남	7,393	123	689	2,156	4,425	901	26	130	359	386	12.2
경북	11,314	160	1,386	3,633	6,135	2,173	106	478	937	652	19.2
경남	15,295	179	1,674	3,988	9,453	3,055	94	692	1,292	977	20.0
제주	895	0	35	256	604	99	0	13	44	42	11.1
합계	163,273	2,122	15,776	44,403	100,972	23,784	837	5,522	9,978	7,447	14.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4.29.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